제330회 임시회
2014. 6. 20.(금)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 청 북 도 의 회
정책복지위원회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4. 6. 20.(금)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충청북도지사

나.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14년 6월 2일

○ 회부일자 : 2014년 6월 5일

다. 상정일자 : 2014년 6월 11일

○ 제33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수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변혜정 여성정책관)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내 명칭과 조직을 상위 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청소년 상담복지·활동진흥·성문화 사업 등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한 효율적인 청소년정책 수행 기반 마련

나. 주요내용

○ 센터 조직 명칭 정비 및 신설 (안 제1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 '복지상담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활동진흥실' ⇒ '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청소년 성문화센터' <신설>

○ 운영위원회 설치 (안 제6조의2)
- 위원회 구성 : 10명 이내(위원장 : 행정부지사)
- 위촉직 위원의 임기 : 2년, 2회 연임 가능
- 기능 : 종합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산운영,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 자문, 행·재정적 지원 등

○ 원장, 센터소장 등 직원 복무기준 변경(안 제8조)
- 원장 및 센터소장 채용과 종사자에 대한 복무기준 마련
- 원　　장 : '비상근' 규정 신설
- 센터소장 : 임기제한 없음 ⇒ 임기 3년, 연임가능
- 팀장 이하 직원 : '정년기준' 규정 신설

3. 검토보고 요지

(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최창국)

○ 본 개정 조례안은「청소년복지지원법」의 전부개정('12. 8. 2) 등에 따라 기존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조직구성, 명칭, 직원 임용 등에 관한 내용을 상위 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를 근거로 설치된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조직에 포함하는 등, 청소년 상담·활동진흥·성문화 사업의 연계활동을 통해 효율적인 청소년정책 수행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 및 법리적 측면에서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에서는** 종합센터의 기능에 "아동·청소년 성교육 및 성문화 체험관 설치·운영" 내용을 신설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기존 '복지상담실'의 명칭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활동진흥실'을 '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변경하였으며,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종합센터의 산하 기관으로 포함시키고,

종합센터에 청소년 정책 수행에 필요한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6조의2에서는** 종합센터 운영의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조항을 신설함.
- **안 제8조에서는** 종합센터 원장의 고용형태를 '비상근'으로 명시하고, 각 센터소장의 임용방식과 임기(3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를 규정함.
- **안 제13조에서는** 비상근 원장에 대한 활동비 지급 조항을 신설하였음.

○ 다만,

- 충청북도 청소년종합지원센터(통합기구)와 하부기구인 3개 센터의 '센터'라는 동일 명칭의 중복사용 및 기관장 명칭의 부적합성으로 인한 도민들의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어, 각 기구의 명칭 및 기관장 명칭에 대해서는 혼란을 피할 수 있는 명칭으로 수정, 검토가 필요함.
- 충북의 경우, 청소년상담, 복지, 활동진흥 업무를 총괄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라는 직영 통합체제로 청소년문제를 접근하고 있고, 과거 비상근 원장의 역할 부재로 인해 무늬만 통합이고, 통합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보이지 못했다는 반성 속에서 민선5기 들어와 새로운 시도로 상근원장 형태로 현 조직 운영의 변모를 시도하였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원장의 고용형태를 '비상근'으로 재변경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또한, 안 제5조제3항에 규정한 통합기구의 사무국 설치와 관련하여 실효성 측면에서 조직규모, 직원규정 등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한 검토와 5개년 비용추계에 필요비용이 제외되어 있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수정안 요지

가. 수정이유

○ ‘센터’라는 동일 명칭의 중복사용 및 기관장 명칭의 부적합성으로 인한 도민들의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므로, 통합기구의 명칭과 하부 센터 기관장의 명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나. 수정 주요내용

○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를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으로, ‘센터소장’을 ‘센터장’으로 수정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제673호

제안년월일: 2014. 6. 11.(수)
제 안 자: 최미애 의원 외

▢ 수정이유

○ “센터”라는 동일 명칭의 중복 사용 및 기관장 명칭의 부적합성으로 인해 도민들의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므로, 통합기구의 명칭과 하부 센터 기관장의 명칭을 수정함.

▢ 수정 주요내용

○ 제명 및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부칙 중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으로 수정하고,

○ 안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8조, 제11조의 ‘센터소장’을 ‘센터장’으로 수정하며,

○ 안 제6조의2에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를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운영위원회’로 수정함.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로 한다.

안 제1조 중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으로 한다.

안 제2조 중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센터”라 한다)”를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로 한다.

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중 “종합센터”는 “진흥원”으로 한다.

안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8조, 제11조 중 “센터소장”을 “센터장”으로 한다.

안 제6조의2 중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운영위원회”로 한다.

안 부칙 제2조 중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명)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명) (현행과 같음)	**(제명) 충청북도 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1조(목적) ------ 「청	제1조(목적) ----------

「청소년기본법」 제46조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에 따라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	---------- ---------- ---------- ---------- ----------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제2조(적용범위) 센터의 운영은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적용범위)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센터"라 한다)**의 운영은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이라 한다)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적용범위)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 ---------- ---------- ---------- ---------- ---------- ---------- ---------- ---------- ------.
제3조(명칭과 소재지)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충청북도 관할 지역 내에 둔다.	제3조(명칭과 소재지) **종합센터** ---------- ---------- ----------.	제3조(명칭과 소재지)**진흥원** ---------- ---------- ----------.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기능) **종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기능) **진흥원** ---- ---------- -------.
제5조(조직) ① 센터에는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원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과 복지상담실, 활동진흥실을 둔다.	제5조(조직) ① **종합센터에는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원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를 둔다.	제5조(조직) ① **진흥원에는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원장**----- ---------- ---------- ---------- --------.

② 센터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복지상담실과 활동진흥실에 팀을 설치하며, 팀별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② **종합센터** 운영을 위하여 원장, **센터소장과** 센터 내 팀을 설치하며, 팀별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종합센터**에는 청소년정책 수행에 필요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진흥원** ----------**센터장과** ----------. ③ **진흥원** ----------.
제6조(원장의 임무) 원장은 센터 운영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센터 업무총괄과 유관기관 연계 협력 2. 인사와 복무관리 3. 예산·회계관리의 집행과 결산 4. 시설물 관리와 화재예방, 도난방지 5. 그 밖에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신 설>	제6조(원장 등의 직무) ① 원장은 **종합센터**를 대표하며, 도지사의 명을 받아 **종합센터**의 직무를 총괄하고, **센터소장**과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센터소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청소년복지 지원법」등에서 정한 사무의 수행과 센터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6조(원장 등의 직무) ① -----**진흥원**----------**진흥원**----------**센터장** -----. ② **센터장**----------.
<신 설>	제6조의2(운영위원회) ① **종합센터** 운영의 자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	제6조의2(운영위원회) ① **진흥원**----------**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운영위원회** ----------. ②~⑤(개정안과 같음)

	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 여성정책관, 원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 추천으로 도지사가 위촉하되, 운영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율은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소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청소년 시설·단체·기관의 장 및 지역 저명인사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과 의결 기능을 수행한다. 1. **종합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 자문 3.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종합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및 운영상황 전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	⑥---------- ----------. 1. **진흥원**---------- ---- 2.~3. (개정안과 같음)

	고 인정하는 사항 ⑦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가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배우자 또는 8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이 된다.	4. **진흥원**---------- ---------- ---------- 5. (개정안과 같음) ⑦~⑧ (개정안과 같음) ⑨----------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된다.
제7조(직원과 정원) 직원은 원장, 실장, 팀장, 팀원, 행정원으로 구분	제7조(직원과 정원) ----- 원장, **센터소장**, 팀장, 팀원----------	제7조(직원과 정원) ----------- **센터장,** ----------

하고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	----------.
제8조(임용) ①원장은 청소년 건전육성과 상담·지도 등에 능력과 자질을 갖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용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실장이하 직원은 원장의 추천 에 의하여 도지사가 임용한다.	제8조(임용) ----------연임할 수 있으며, 비상근으로 한다. ② **센터소장은** 청소년 건전육성과 성문화사업 수행 등에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 중에서 원장의 추천에 따라 도지사가 임용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임용) ①(개정안과 같음) ② **센터장은** ----------.
제11조(직무대행과 팀장의 겸직) ① 센터의 원장이 결원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복지상담실장, 활동진흥실장 순으로 대행한다. ② 복지상담실, 활동진흥실의 실장은 소속 팀장을 겸직할 수 있다.	제11조(직무대행) 원장이 결원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청소년활동진흥센터소장, 청소년성문화센터소장** 순으로 대행한다. <삭 제>	제11조(직무대행)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청소년성문화센터장**----------.
제13조(보수) 센터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보수지급 기준 : 보	제13조(보수) **종합센터**----------. 1. (현행과 같음) 2. ----------여성	제13조(보수) **진흥원**---------- 1.~2. (개정안과 같음)

건복지가족부 지방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침상의 보수지급 기준에 따른다.	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 다만, 비상근 원장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에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지도 · 감독)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운영과 예산 · 회계, 비품관리 등 제반사항을 지도 · 감독할 수 있다.	제14조(지도 · 감독) ----**종합센터**---------**종합센터**----------.	제14조(지도 · 감독) ----**진흥원**----------**진흥원**----------.
제15조(피상담자와 피보호자의 보호) 센터의 직원은 상담이나 보호를 요청한 자로부터 취득한 제반 상담내용과 보호요청에 대하여 개별적 내용을 공개하거나 상담과 보호업무 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피상담자와 피보호자의 신분과 명예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5조(피상담자와 피보호자의 보호) **종합센터**---------.	제15조(피상담자와 피보호자의 보호) **진흥원**---------.
제16조(재정수입) 센터의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6조(재정수입) **종합센터** -------.	제16조(재정수입) **진흥원** ----.
제17조(회계년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7조(회계연도) **종합센터**----------.	제17조(회계연도) **진흥원**----------.

제19조(예산과 결산 등) ① 센터는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9조(예산과 결산 등) ① **종합센터** ----------해당 연도의 여성가족부 지침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 ② **종합센터** ----------해당 연도의 여성가족부 지침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 ③ 센터의 예산은 명확히 구분하여 편성 및 집행한다.	제19조(예산과 결산 등) ① **진흥원** ----------. ② **진흥원** ----------. ③ (개정안과 같음)
	부칙 제2조(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원장 등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내의 직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조(직원에 대한 경과조치)----------**「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 제46조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에 따라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으로 한다.

제2조 중 “센터의 운영은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운영은 「청소년복지 지원법」과「청소년활동진흥법」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복지 지원법」등” 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는”을 “진흥원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센터는”을 “진흥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제33조제1항”을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3. 아동・청소년 성교육 및 성문화체험관 설치・운영

같은 조에 “제3호”를 “제4호”로, “보건복지가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센터에는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원장”을 “진흥원에는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원장”으로, “복지상담실, 활동진흥실을”을 “청

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센터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복지상담실과 활동진흥실에”를 “진흥원 운영을 위하여 원장, 센터장과 센터 내”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진흥원에는 청소년정책 수행에 필요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원장의 임무)”를 “(원장 등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며, 도지사의 명을 받아 진흥원의 직무를 총괄하고, 센터장과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센터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에서 정한 사무의 수행과 센터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2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운영위원회) ① 진흥원 운영의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 여성정책관, 원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 추천으로 도지사가 위촉하되, 운영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율은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소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청소년 시설·단체·기관의 장 및 지역 저명인사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과 의결 기능을 수행한다.

1. 진흥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 자문

3.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진흥원 운영 활성화 방안 및 운영상황 전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가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배우자 또는 8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된다.

제7조 중 “실장, 팀장, 팀원, 행정원”을 “센터장, 팀장, 팀원”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있다”를 “있으며, 비상근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② 센터장은 청소년 건전육성과 성문화사업 수행 등에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 중에서 원장의 추천에 따라 도지사가 임용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③ 팀장이하 직원은 원장의 추천에 따라 도지사가 임용하며, 여성가족부 운영지침상의 정년기준을 준용한다.

같은 조에 “제3항”을 “제4항”으로, “원장, 직원의 자격기준”을 “직원의 자격기준”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경력산정기준) 원장을 제외한 직원의 경력산정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지침상의 경력산정 기준표에 따른다.

제10조 중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로, "제19조"를 "제25조"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직무대행) 원장이 결원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청소년성문화센터장 순으로 대행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센터"를 "진흥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 지방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지방청소년활동진흥 센터"를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비상근 원장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에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중 "센터"를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제15조 중 "센터"를 "진흥원"으로 한다.

제16조 중 "센터"를 "진흥원"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로 하고, 같은 조 중 "센터"를 "진흥원"으로 한다.

제18조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센터는”을 “진흥원은”으로,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을 “연도의 여성가족부 지침에서 정하는 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센터는”을 “진흥원은”으로, “다음 회계연도 2월말”을 “해당 연도의 여성가족부 지침에서 정하는 기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센터의 예산은 명확히 구분하여 편성 및 집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원장 등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내의 직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46조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에 따라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
제2조(적용범위) 센터의 운영은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적용범위)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운영은 「청소년복지 지원법」과「청소년활동진흥법」 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복지지원법」등" 이라 한다) -----.
제3조(명칭과 소재지)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충청북도 관할 지역 내에 둔다.	제3조(명칭과 소재지) 진흥원은----------.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제33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	제4조(기능) 진흥원은 ----------. 1.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하는 사업과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아동·청소년 성교육 및 성문화체험관 설치·운영 4. ---------- 여성가족부----------
제5조(조직) ① 센터에는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원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과 복지상담실, 활동진흥실을 둔다. ② 센터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복지상담실과 활동진흥실에 팀을 설치하며, 팀별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5조(조직) ① 진흥원에는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원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를 --. ② 진흥원 운영을 위하여 원장, 센터장과 센터 내----------. ③ 진흥원에는 청소년정책 수행에 필요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6조(원장의 임무) 원장은 센터 운영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센터 업무총괄과 유관기관 연계 협력 2. 인사와 복무관리 3. 예산·회계관리의 집행과 결산 4. 시설물 관리와 화재예방, 도난	제6조(원장 등의 직무) ①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며, 도지사의 명을 받아 진흥원의 직무를 총괄하고, 센터장과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방지 5. 그 밖에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신 설>	② 센터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청소년복지 지원법」등에서 정한 사무의 수행과 센터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
<신 설>	제6조의2(운영위원회) ① 진흥원 운영의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 여성정책관, 원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 추천으로 도지사가 위촉하되, 운영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율은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소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청소년 시설 · 단체 · 기관의 장 및 지역 저명인사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

	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과 의결 기능을 수행한다. 1. 진흥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 자문 3.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진흥원 운영 활성화 방안 및 운영상황 전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가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배우자 또는 8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

	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된다.
제7조(직원과 정원) 직원은 원장, 실장, 팀장, 팀원, 행정원으로 구분하고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직원과 정원) ---------- 센터장, 팀장, 팀원 으로----------. ----------
제8조(임용) ① 원장은 청소년 건전육성과 상담·지도 등에 능력과 자질을 갖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용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실장이하 직원은 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도지사가 임용한다. <신 설> ③ 원장, 직원의 자격기준과 선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임용) ① ---------- ---------- ---------- ---------- ----- 있으며, 비상근으로 한다. ② 센터장은 청소년 건전육성과 성문화사업 수행 등에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 중에서 원장의 추천에 따라 도지사가 임용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팀장이하 직원은 원장의 추천에 따라 도지사가 임용하며, 여성가족부 운영지침상의 정년기준을 준용한다. ④ 직원의 자격기준과 선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경력산정기준) 직원의 경력산정은 보건복지가족부 지방청소년	제9조(경력산정기준) 원장을 제외한 직원의 경력산정은 여성가족부

상담지원센터와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침상의 경력산정 기준표에 따른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지침상의 경력산정 기준표에 따른다.
제10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자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제10조(결격사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25조----------.
제11조(직무대행과 팀장의 겸직) ① 센터의 원장이 결원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복지상담실장, 활동진흥실장 순으로 대행한다. ② 복지상담실, 활동진흥실의 실장은 소속 팀장을 겸직할 수 있다.	제11조(직무대행) 원장이 결원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청소년성문화센터장 순으로 대행한다. <삭 제>
제13조(보수) 센터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보수지급 기준 : 보건복지가족부 지방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지방청소년활동진흥 센터 운영지침상의 보수지급 기준에 따른다. <단서 신설>	제13조(보수) 진흥원 ----------. 1. (현행과 같음) 2. ----------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 다만, 비상근 원장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에 필요

	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지도 · 감독)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운영과 예산 · 회계, 비품관리 등 제반사항을 지도 · 감독할 수 있다.	제14조(지도 · 감독) ------- 진흥원 ---------- 진흥원 ----------.
제15조(피상담자와 피보호자의 보호) 센터의 직원은 상담이나 보호를 요청한 자로부터 취득한 제반 상담내용과 보호요청에 대하여 개별적 내용을 공개하거나 상담과 보호업무 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피상담자와 피보호자의 신분과 명예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5조(피상담자와 피보호자의 보호) 진흥원----------.
제16조(재정수입) 센터의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6조(재정수입) 진흥원----------.
제17조(회계년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7조(회계연도) 진흥원----------.
제18조(재산과 회계관리) 재산과 회계관리는「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재산과 회계관리)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예산과 결산 등) ① 센터는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	제19조(예산과 결산 등) ① 진흥원은 ---------- 연도의 여성가족부 지침에

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서 정하는 기한----------. ----------. ② 진흥원은 ---------- 해당 연도의 여성가족부 지침에서 정하는 기한----------. ③ 센터의 예산은 명확히 구분하여 편성 및 집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군·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自活) 및 재활(再活)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2. 지역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3.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지원
4.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홍보와 지원
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6.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7. 그 밖에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0호 및 제14호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12호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

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

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5.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8.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10.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4. 「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15.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의 청소년활동의 기획·주관·운영을 하는 사업장(이하 "청소년활동기획업소"라 한다)
16. 영리의 목적으로 연기·무용·연주·가창·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 또는 제공하려는 의사를 가진 자를 위하여 훈련·지도 또는 상담을 하는 사업장(이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라 한다)
17. 아동·청소년의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이하 이 호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등

가. 아동·청소년과 해당 시설등의 운영자·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 사이에 업무상 또는 사실상 위력 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시설등

나. 아동·청소년이 선호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시설등으로서 해당 시설등의 운영 과정에서 운영자·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에 의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성범죄의 경력 조회) ① 법 제5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조회를 요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교육장 또는 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 2018 (5년)

○ 내　　용 :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 비용 발생 요인

○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제비용

3. 관련조문

○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제4조(기능)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13년, ’14년도 당초예산 국가 및 지자체에서 충청북도청소년지원 관련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토대로 비용 추계

○ 물가 변동과 인상요인을 적용하였음

나. 추계 결과

○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운영(‘14~’18)

- 5,510,883천원(국979,536, 분권1,572,034, 도2,959,313)

다. 재원조달방안

○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운영(‘14~’18)

- 5,510,883천원(국고 보조금 2,551,570, 도비 2,959,313)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여성정책관　변 혜 정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14년)	2차년도 ('15년)	3차년도 ('16년)	4차년도 ('17년)	5차년도 ('18년)	계
세 입		1,038,000	1,069,140	1,101,214	1,134,251	1,168,278	5,510,883
국 비		184,500	190,035	195,736	201,609	207,656	979,536
분권교부세		296,100	304,983	314,132	323,556	333,263	1,572,034
도 비		557,400	574,122	591,346	609,086	627,359	2,959,313
세 출		1,038,000	1,069,140	1,101,214	1,134,251	1,168,278	5,510,883
인 건 비		651,558	671,105	691,238	711,975	733,334	3,459,210
일반운영비		99,442	102,425	105,498	108,663	111,923	527,951
사 업 비		287,000	295,610	304,478	313,613	323,021	1,523,722
재원 조달		1,038,000	1,069,140	1,101,214	1,134,251	1,168,278	5,510,883
의존재원	소 계	480,600	495,018	509,868	525,165	540,919	2,551,570
	보조금	480,600	495,018	509,868	525,165	540,919	2,551,570
	지방교부세						
자체수입	소 계	557,400	574,122	591,346	609,086	627,359	2,959,313
	지방세	557,400	574,122	591,346	609,086	627,359	2,959,313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구·군비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